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시 시 해양이용에 따른
유발지진 및 환경위해의 정도 고려〉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10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시 시 해양이용에 따른 유발지진 및 환경위해의 정도 고려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0일 장철민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
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시 시 해양이용에 따른 유발지진 및 환경 위해의 정도 고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이용에 따른 유발 지진 및 환경위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② (생략)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2. (생략)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화학 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 (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유발(誘發) <u>지진 등 물리적</u> ----- ----- <u>예측, 환경위해의 정도</u>

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등¹⁾은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성평가 분야는 ①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②해역별 특수성, ③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시추 착수를 계획 중²⁾인데 이로 인한 지진 발생의 우려가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 개요

구분	해양이용협의영향평가
목적	개발 행위의 '해양환경' 영향 + 이용 적정성 검토
평가 대상	해양공간 전역(영해~EEZ 등)의 개발 행위 (공유수면 점사용, 준설, 광물·골재채취 등)
평가 항목	해양환경 특화(협의 9개, 평가 13개 항목) 협의: 공간이용, 사회경제, 해양물리, 해양수질토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위해요인 평가: 협의 9개 항목 + 대기질·기상, 경관·빛, 소음·진동, 전자기장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9.25.)에 따르면, 산업부는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임.

있으므로 해양이용·개발사업 시 유발지진 및 환경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에 유발지진 및 환경위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려사항을 보완하고, 해양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특히 지형·지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공간 이용·개발 시 그 영향을 평가하는 현행법에 지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특정 평가항목³⁾을 법상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⁴⁾ (현행법 제6조제4항)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를 참고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역시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3) 공간이용, 사회경제, 해양물리, 해양수질·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위해요인, 대기질·기상, 경관·빛, 소음·동, 전자기장

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지형·지질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에 지질재해(산사태, 지진 등) 이력,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질재해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구 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2. 환경영향평가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IX.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4. 토지환경분야 다. 지형·지질 1) 현황 : 지질재해(산사태, 지진 등) 이력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 3) 저감방안 및 평가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공간 전역의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따라 평가항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발지진 등’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라고 지진을 대표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에 ‘지진’에 대한 평가항목·방법을 규정하고, 행정규칙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할 예정⁵⁾이고,

현행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시(조사→분석→영향 예측→저감방안 순) 조사·분석 과정에서 산출한 ‘환경위해 정도’를 기준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지진’과 같은 특정 평가항목이나 ‘환경위해의 정도’를 법상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

5) 현행법 시행일은 2025.1.3.이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10.24.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행정규칙은 2025년도 중에 수립할 계획임.